

2010. 12. 9 ~ 12. 15

제171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채근

<의안번호 제2010 - 55호>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제출일자 : 2010. 11. 16(화)
- 제출자 : 거창군수
- 회부일자 : 2010. 11. 17(수)

2. 제안근거 및 사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중인 기금에 대하여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함.

3. 기금조성 현황(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말 현재액	2011년도 조성계획			2011년도말 현재액
		수 입	지 출	증 감	
옥외광고정비기금	0	24,610	0	0	24,610
재난관리기금	824,200	598,222	800,000	△ 201,778	622,422

4. 검토의견

【 옥외광고물정비기금 】

-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기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및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옥외광고물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충당 하기 위하여 2010. 3. 29 조례 제1967호로 제정되어 2011년도 부터 2015년까지 5개년간 계획으로 기금 2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임.
- 2011년도 기금운용(조성)계획은 전년도 이월금은 없으며 증 수입 1,300천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수익금 20,000천원, 이자수입 310천원, 옥외광고 수익금 3,000천 원으로 총 24,610천원 조성계획이며, 지출계획은 없음.

【 재난관리 기금 】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 시설 및 장비의 확보, 신속한 복구로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에 의거 재난예방시설 설치 및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일반회계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야 하며, 2011년도 법정 적립금은 일반회계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임.

- 2011년도 기금운용(구성)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824,200천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77,222천원, 도비전입금 400,000천원 이자수입 21,000천원으로 되어 있으며, 지출계획은 월포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800,000천원임.
- 법정 적립금 확보, 기금사업의 목적 및 사용용도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참고자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기금은 세계현금(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채발행한도액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기금의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④그 밖에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개정 1994.3.16, 1999.8.31>

1. 조례의 제정 및 개폐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외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군 또는 자치구로 배분되는 수익금
2.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

③ 기금은 광고물등의 정비, 경관 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그 밖에 시·군 또는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